



발주서

P/O No : PO230119160

발 주 일 : 2023.01.19

■ 프로젝트	7P220741AMMPS
■ 발주명	해저 공정용/ 완제품용 Turn Table (2단계 투자)_제어부(사외용역)
■ 공급사	주식회사일선시스템
■ 발주금액	일금 사억천사백만 원정 (414,000,000) (VAT 별도)
■ 계약기간	2023.01.19 ~ 2023.12.31

[대금지급조건]

- 결 제 수 단 : 현금
- 선 급 금 : 82,800,000 20.00%
계약후
- 중 도 금 : 289,800,000 70.00%
기성지급
- 잔 금 : 41,400,000 10.00%
기성지급

[이행보증]

- 계약이행 보증율 : 10.00
- 선급금 보증율 : 선급금전액
- 하자이행 보증율 : 10.00
- 하자이행보증기간 : PJT완료후 12개월

* Remark

- 선급금, 중도금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발주자와 공급자는 별도로 체결한 기본계약서와 본 발주서의 부속조건인 별첨의 '기본조건' 및 비밀유지조건'을 준수하며, 전자계약을 통해 양사가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보관한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약정보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된다.
- 지연이자요율: 연 6% (대금지급, 반환요율) / 연 10% (손해배상 지연)
- ※ 하도급법령상 지급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공정위의 고시 지연이자율 우선 적용
-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에게 제공을 요청하는 기술자료(결과물 혹은 목적물 등)의 경우, 그 대가(금액) 지급이 완료되면 양사간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의(목적물 소유권 이전)조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권리가 귀속됨.

'발주자'와 '공급자'는 본 발주계약을 체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 [Buyer's Name & Address]

업 체 명 (주)에스에프에이 아산사업장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윤보선로 262
대 표 자 김영민

전자서명완료

■ 공급자 [Supplier's Name & Address]

업 체 명 주식회사일선시스템
주 소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봉신로 138-10
대 표 자 강정수

전자서명완료

Contract NO : CT20230119071

[기본 조건]

제 1조 [사급자재]

기본계약 제 11조, 12조 및 별도 사급명세서 또는 시방서 내용에 준한다(단, 사급 자재가 없는 경우 생략한다)

제 2조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1일 1.5/1000의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제 3조 [품질관리]

1. "공급자"는 목적물에 대해 기획,설계,생산,판매등의 전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 운영하여 기본 계약 제 5조, 7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며 또한 "발주자"가 요구 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공급자"는 목적물 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 변경 등의 경우에 발주자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3. 기타사항은 기본계약 제15조 자가품질검사등에 따른다.

제4조 [계약해제 및 해지]

1.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 할 능력이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자" 또는 "공급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발주자"또는"공급자"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의 강제 집행(가압류 및 가처분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 신청 등의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본계약 제 5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일반사항]

본 발주서의 일반사항은 기본계약서의 조건과 별도의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발주자"와 "공급자"는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계약을 통하여 양사간 공인인증서로 서명 후 보관한다.

제6조 [도면관리]

본 발주서에 의해 발주되어 제작 참고한 "발주자"의 제작도면은 잔금 지급 시, "공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도면을 "발주자"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다.

제7조 [제조물책임]

1. '공급자'는 '발주자'가 발주한 물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공급가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제조물 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4.'발주자'와 '공급자'는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방지, 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8조 [안전관리약정]

① 발주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공급자에게 발주자의 고객사 현장에서 근무(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보험가입 후 발주자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고객사 현장 근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외용역 발주(개별계약)내역 상의 노무비에 따른 보험료를 확인하고, 그 보험료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② '공급자'의 근로자가 프로젝트 수행 중, 자신의 고의 또는 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기타 안전수칙 불이행 등 '공급자' 혹은 '공급자'의 근로자 귀책으로 '공급자'의 근로자나 '발주자' 혹은 '제3자'의 자산이나 물적, 인적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프로젝트의 계속 시공여부는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안전기본준수사항]

□ 관리일반

1. 현장책임자(안전담당자)는 항상 현장에 상주한다.
2. PM의 안전지시에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3. 신규작업인원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 안전교육, 보고후 지급 등의 안전조치를 받도록 하며,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한다.
4. 안전사고 발생시는 즉시 PM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복장보호구

1.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한다.
2. 고소작업등 필요시에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한다.
3. 작업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 단정한 복장상태를 유지한다

□ 고소작업

1. 고소작업 전 반드시 특별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
2. 단독작업을 금하며 안전담당자 입회 하에 작업에 임한다.
3. 작업 전 추락재해 예방시설에 대해 사전 협의하여 안전망, 간간, 구명줄 및 승강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한다.
4. B/T비계는 유공작업발판, 안전간간, 캐스터 및 스토퍼를 설치한다

□ 위험기계

1. 사용 전 PM에게 통보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한다.
2. 전기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가스용접기는 역화방지기를 부착하고 작업에 임한다.
3. 가스용접기는 전도방치조치를 하고 대차에 실어 사용한다.

□ 크레인작업

1. 크레인작업 전 조정면허, 중기보험 및 정기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한다.
2.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장치 등의 유무를 점검 받은 후 사용한다.
3. 작업 중에는 신호수1인을 지정 배치하고 지정된 신호에 따라 한다.

□ 화기작업방화관리

1. 용접, 절단작업시에는 불꽃 비산방지 조치를 한다.
2. 화기작업장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인화물이 없도록 한다.
3. 가스봄베,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4.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작업중, 보행중 흡연은 금한다.

□ 전기안전

1. 현장내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반드시 케이블선으로 한다.
2. 분전반 이용시에는 규정된 단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접속하여 사용.
3. 전선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격 하고 피복의 손상유무를 수시 점검함.

□ 정리정돈

1. 작업종료 후에는 반드시 현장의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2. 자재, 폐자재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비 밀 유 지 조 건]

제 1조 [보안책임]

- (1) '공급자'는 '발주자'의 비밀을 성실히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 비밀보호를 위한 비밀유지조건에 정한 바에 따라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공급자'의 종업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주자'의 비밀이 누설되었을 때에도 비밀보호 책임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조 [비밀]

본 비밀유지조건에서 말하는 비밀이란 '공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발주자'의 소유 정보 사항 (각종문서, 도면, 디스켓, USB, 녹음테이프, 사진, 장비, 자재 등)의 '발주자'가 제공한 모든 것을 말한다

제 3조 [비밀의 유지]

- (1)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문서, 도면 또는 장비, 자재 등(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취급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다하고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용역 또는 제조에 직접 관계없는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만약 동 사항에 대한 내용을 누설할 경우에는 본 비밀유지조건에 준하는 서면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 (2) '공급자'는 '발주자'의 지시 또는 승낙 외에는 '발주자'의 비밀을 복사, 복제, 번역, 배포 내지 기타(이하 '생산된 비밀'이라 칭함)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공급자'는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 잔금 요청시 하자증권과 함께 제작도면 및 기타 비밀 일체를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 4조 [비밀유지조건 효력]

- (1) 본 비밀유지조건은 발효일은 '발주자'와 '공급자' 쌍방이 서명한 날(전자서명포함)로부터 한다. 단, 비밀유지조건은 발효일 이전 쌍방의 합의에 의해 개발업무를 수행한 경우 본 비밀유지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 (2) 본 비밀유지조건은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 5조 [방문 및 출입통제]

- (1) '공급자'의 연구실/공작실/제조실/시험실 등에 외래인의 방문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2) '발주자'가 제1항의 방문승인을 하는 때에는 방문자에 대한 비밀공개 범위를 지정하고 필요한 보안조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 '공급자'는 제1항의 외래인의 방문통제 이외에 '발주자'의 사전 허가없이 소속직원 또는 종사원으로서 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 6조 [통지의 의무]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본 비밀유지조건에 정한 비밀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본 비밀유지조건에 정한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위촉 및 하청]

- (1) '공급자'는 '발주자'가 위촉한 비밀에 속하는 기술용역 또는 제조를 수행함에 있어 하수급인에게 이를 위촉 또는 하청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그 위촉 또는 하청의 내용과 사유 및 보안대책(본 비밀유지조건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비밀유지계약의 체결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등을 포함한 사항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발주자' 또는 '공급자'는 전항에 의해 하수급인에게 위촉 또는 하청을 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하수급인의 비밀유지상황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8조 [비밀의 공표]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업무 또는 제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을 '발주자'의 비밀사항 및 제품에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광고, 신문, 학회지 및 기타의 수단에 의해 공표하거나 학술적인 목적의 토의, 발표(세미나) 등을 할 수 있다.

제 9조 [보안사고 발생시 조치]

'공급자'는 자기의 책임으로 비밀이 분실, 파기, 누설되는 등 보안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필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상세한 전말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0조 [누설 시 처벌]

'공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공여, 증여 및 누설시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 18조에 의한 책임은 물론 제 법규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책임은 물론 제 법규에 따른 민사, 형사상의 손해 배상 및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종료]

'공급자'가 본 비밀유지조건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그 위반을 시정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그 최고일로부터 3주일이 경과한 후에도 그 시정이 없는 때에는 '공급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의 최고가 계약해지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 12조 [분쟁해결]

본 비밀유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비밀유지조건의 각 조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와 공급자가 체결한 하도급기본계약 제49조 분쟁해결 조항에 따른다.

제 13조 [부정경쟁방지]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 '발주자 고객' 및 '발주자 고객'의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잉여자재반납확약서

당사는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로부터 상기 발주(계약) 건으로 지급받은 사급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할 것이며, 에스에프에이의 동의 없이 해당 PJT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사용 후 발생한 잉여자재 및 구리, 알루미늄 등 고가의 스크랩은 프로젝트 종료 후 에스에프에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구리, 알루미늄 등 스크랩이 소량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에 따른다.)

▶ 잉여자재 접수처

구매그룹 자재관리

화성 최준섭 과장 031-379-1751

일 자 : 2023.01.19

회사명 : 주식회사일선시스템

확인자 : 강정수